powerful pohang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의	장	
선					
람					



포항시보

제 766호 2010. 2. 2(화)

 ○시장지시사항
 2

 【입법예고 ▶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입법예고(제2010-137호)
 4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 2010-150호)
 9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0-151호)
 32

 【공 고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제2010-130호)
 38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39

회				
람				

발행 : 포항시 편집 : 홍보담당관(☎270-2234)

190×268 신문용지 70g/m²

시장님 지시(훈시)사항

- 2010. 2. 1(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2. 1)	○ 그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림	전부서
(=: 2)	 일본 연수에 국·과장 모두가 참여되도록 하기 바람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을 수립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전부서 (국제협력팀) 수산진흥과
	○ 각종 모금활동과 관련 '경상북도 공동모금회' 명의 의 입금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	주민복지과
	 ○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 있을 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검토 조치하기 바람 - 구룡포읍~ 호미곶면 도로확장사업에 가로등을 과다하게 설치한 부분 검토 및 대책 추진 바람 	건설과
	 자전거도로 개설시 '자전거전용 보드블럭' 사용하여 미관조성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건설과
	 ○ 임하댐에 보다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 및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바람 - 2020년까지 21만톤의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되므로 낙동강수계 관리 등과 관련 임하댐에 많은 양의 물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바람 	상수도과
	 ○ 설맞이 종합대책 마련 및 추진 철저 - 설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시장·터미널· 다중집합장소 등에 현장방문 지도 점검토록 하기 바람 - 새마을기념관·덕실마을·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미술관·새천년기념관 등 볼거리를 홍보할 것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경제노동과 교통행과 건축과 관광진흥과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2. 1)	○ 추경을 통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	전부서
(2. 1)	○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할 것	녹색성장팀 재정관리과
	○ '탄소배출권 거래'및 '탄소거래소 설립'과 관련한 대책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녹색성장팀
	○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출은 카드를 이용토록 지도하기 바람	전부서 기획예산과
지 시 10-112	○ 서울 노원구청에서 전시중인 '호랑이전'을 밴치마킹 하여 새천년기념관 등에서 전시를 검토·추진 바람	관광정책과
지 시 10-113	 ○ '구룡포 대게' 홍보물 설치 바람 -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지역 등에 대게 홍보용 대형 홍보물을 설치 바람(대게·과메기 시식장면, 오징어 관련 장면 등) 	수산진흥과
지 시 10-114	○ 남구 이동지역에 시외(고속)버스 등이 잠시 승객들을 하차할 수 있도록 협의·검토 추진 바람	교통행정과
지 시 10-115	○ 칠포리 마을 인근 도로 미확장 구간 조기개설 추진 - 도로 지장물(건축물) 조속한 철거 및 사업 조기 완료 하기 바람	건설과
지 시 10-116	 이용실적이 저조한 공중전화 BOX 철거를 검토 추진 KT등과 협의하여 공중전화BOX 이용실적이 부진한 곳은 철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보고하고, 가로가판대 등은 설치수량을 반으로 줄이도록 검토 추진 바람 	건설과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0 - 137호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0. 1. 28.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와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지원사업내용, 대상범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구성 ·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마.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관련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

4. 의격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2.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 여성문화회관장(주소 : 포항시 북구 우현동 4B1L, 전화 054-270-5552, FAX 054-270-5540, E-mail : j01hr@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정안 1부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 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가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2. "결혼이민자등" 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 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4.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 5.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
 -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
 - 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 6. 결혼이민자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사업
 - 7.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 8.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5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 제7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포항시 다문화가 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시의회 의원
- 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 3. 다문화가족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4.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 5.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 6. 그 밖의 관련 전문가
-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포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사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다문화가족지원법령" 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 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 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0년 1월 29일

포항시 공고 제 2010 - 150호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재편성하며.
-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소득세의 폐지를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재조정하는 등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안 제3조)
- 나.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안 제18조 외)
- 다. 우편송달의 경우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으로 하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조의2)
- 라. 과표구간별 세율이 인하된 주택분 재산세율의 조정 등 지방세법의 변동내용을 반 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안 제27조)

3. 관련법령

- O 「지방세법」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지방세 조례 표준안 시달(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8호, 7503호, 8605호. 2010.1월)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재정관리과장, 주소: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054-270-2486, 팩스:054-270-2490, E-mail:tax09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0 주 소:

O 전화 번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세
- 2. 지방소득세
- 3. 재산세
- 4. 자동차세
- 5. 주행세
- 6. 담배소비세
- 7. 도축세

제1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우편 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납입통지서·독촉장 또는 최고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 등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사업소"로, "사업장을"을 "사업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 ②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제20조제1항 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사업장을"을 "사업소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 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 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다만,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세 조례」 제24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제20조의2 다음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 제21조제1항 중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중 "법인세할 · 소득세할"을 "법인세분 · 소득세분"으로,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한다.
- **제22조의2 제목 중** "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한다.
- **제22조의2제2항 중** "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소득세법」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22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중** "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그 다음달 말일까지"를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2(주민세 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세율) ①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충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0조의2(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1-1-01-1-1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세율〉

1.000분의 1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2장 제4절 농업소득세를 삭제한다.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3장 제2절 사업소세를 삭제한다.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한) 제91조의 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 ① (생 략) ②보통세는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사업소세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 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 법이란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 51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 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

혀 햇

개 정 안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 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 수인 등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 다.

② (생략)

제18조(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구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신 설)

되,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납 입통지서·독축장 또는 최고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은 등기우 편으로 하고, 30만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 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 물접수인 등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110211	11-11	17 © <u>E</u>	0 1	

제18조(난세이무자) ① 규드부----

-	-	-	_	_	_	_							-	人	} <	검	소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u>사업소</u>	
<u>사업소를</u>	-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 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현 행	개 정 안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균등분으는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②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세율) ① <u>균등할</u> 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가. (생 략) 나. 시내에 <u>사업장을</u> 둔 개인의 표	제20조(세율) ① <u>균등분</u>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u>사업소를</u>

현 행 준세율:: 50,000 2. 법인		기 2. 법인		
구 분	세 율	7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 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 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 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 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 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를 준일 현재의 자본 자금액을 말한다. 서 같다) 100억 법인으로서 과세 당 사업소의 종일 의8제9호에 따른 다. 이하 이 조의	본금액 또는 출 이하 이 조에 원을 초과하는 기준일 현재 해 업원(법 제176조 종업원을 말한 네서 같다) 수가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등 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 는 법인의 표준세율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 초과 100억원 ©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 수가 100 법인	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소의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 등의 중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을 초과하는 법인 준일 현재 해당 원 수가 100명 자본금액 또는 출 초과 50억원 이하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 수가 100 법인	l으로서 과세기 사업소의 종업 이하인 법인과 ¿자금액 30억원 †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소의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의 표준세율	1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이하 30억원 초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 수가 100과 자본금액 또는 억원 초과 30억으로서 과세기준일 업소의 종업원 수과하는 법인	과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소의 명 이하인 법인 는 출자금액 10 원 이하 법인으 현재 해당 사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현 행	개 정 안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 득 세 할 법 인세액의 100분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방업소득세할 방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방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②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다만,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 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신 설)	제20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세 조례」제24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중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u>(신 설)</u>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u>법인세할</u> 의 납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u>법인세분</u>

개 혅 했 정 아 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 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 장 소재지 시. 군별로 안분 계산하 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 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 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 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 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로부터 각각 1월내에 시장에게 신 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 정 또는 수정 신고로 인하여 사업 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 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 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 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 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 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 --법인세분-----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 ②소득세분-----(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 까지 제2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법인세분----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 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 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 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장

현 행	개 정 안
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할 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 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 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u>법인세할·소득세</u> 할의 납세지 또는 <u>법인세할</u> 의 안분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법 제177조의2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시장에 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u>법인세할</u> 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소득세분 법인세분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 의무자는 「국세기본 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	제22조의2(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분

혀 햇

- 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 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 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 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을 법 제 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 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 과고지 한다.
-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 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 법」제70조 내지 제72 조 및 제110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 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 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 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개 정 안

②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 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소득세분
3
소득세분
(4)
소득세분
<u> </u>
<u>소득세분</u>
5
<u>소득세분</u>
<u>.</u>
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현 행	개 정 안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 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 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2(주민세 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4(세율) ①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신 설)	제22조의5(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 사항은 제20조의2(주민세 신고의 무)를 준용한다.
제27조(세율) ① (생 략) 1. ~ 2. (생 략) 3. 주택 가. (생 략) 나. <u>가목 이외의 주택</u>	제27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주택 가. (현행과 같음) 나. <u>가목 이외의 주택</u>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 금액의 1,000분의 3	<과세표준> <세월>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 6만원+6천만원 초과금 만원 이하 액의 1,000분의 1.5
1억원 초과24만원+1억원 초과액의 1,000분의 5	1억5천만원 초과 3억 19만5천원+1억5천만원 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 5.(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제04절 농 업 소 득 세	(삭 제)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의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들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전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기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기가 보다면 가장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	는 한 을 의 나 각 영 을 그 배 그 인 언

현 행	개 정 안
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 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u>(삭 제)</u>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 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 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 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 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삭 제)</u>
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 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 소득세를 부과한다.	<u>(삭 제)</u>

현 행	개 정 안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 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31일까지 농업소득이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 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정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 소득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하며,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영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정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정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참기액을 보하며, 필요정비의 중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삭 제)

혀 해	개 정 안
원 앵	ળ જિ સ
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 오 계산한 금액 을 공제한다.	
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2만원 +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72만원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672만원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삭 제)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동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 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 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 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지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 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 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 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제156조의 정 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 하여 징수한다.	<u>(삭 제)</u>
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증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①수 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 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 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안 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 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02절 사 업 소 세	<u>(삭 제)</u>
제95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 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중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삭 제)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97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 산 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한다.	(삭 제)
제98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 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 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u>(삭 제)</u>
제99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중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삭 제)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0년 1월 29일

포항시 공고 제 2010 - 151호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수정내용과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계속하여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규정이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과 중복 된다는 이유로 2009.12.29 (조례 제973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감면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정 하고자 조례에서 도시계획세의 감면사항을 추가함. (안 제13조)
- 나.「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 등록에 한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12.31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함. (안 제16조의2)

3. 관련법령

- O 「지방세법」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846호, 11305호, 2009,12월)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재정관리과장, 주소: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054-270-2486, 팩스:054-270-2490, E-mail:tax09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0 주 소:

O 전화 번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2010. 2. 2(화)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 항제2호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로 ,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로 ,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 제한다."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 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6조의2 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동차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혀 했 개 정 아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지를 말한다) •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ㆍ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 임대용 공동주택(이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 행령」제7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임대 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 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 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 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 2호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 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 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 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 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현 행 개 정 안 <u>같다)에 대하여는 재</u>산세를 면제하 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 다. 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 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 3. (현행과 같음) 2. ~ 3. (생략)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 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지를 말한다) •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ㆍ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 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

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 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 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

<u>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u>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1

현 행	개 정 안
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 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 설을 <u>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u>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 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 호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 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 3. (현행과 같음)
</td <td>제16조의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 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 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 의5제1항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td>	제16조의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 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 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 의5제1항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공 고

포항 도시계획시설(대로1류11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 0 1 0. 1. .

포항시 공고 제2010 - 130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공람공고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일시 및 장소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9:00~18:00)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내용

사업명	위 치	사 업 내 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대로1류 11호선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043-28번지 일원	o 도로개설 길이=327.3m, 폭=12m 면적 = 6,472㎡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일 ~ 2010.12.31	포항시장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담당 (☎(054) 270-347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0년 1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 1. 27.

포 항 시 수 돗 물 평 가 위 원 회 위 원 장

人	행 일	2010년 1월 중	검 사 기 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

정 수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전	갈 평	병포	약성	학 0:
구	검 사 항 목	정수장,상수원 공급지역	안계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안계	형산강 복류수 안계댐수		눌태지수	곡강천 복류수	(수지원공사)
분		기준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릉포읍	홍해읍	신망,기계 일부
01	1.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ℓ0löl	0	0	0	0	0	0	0	0	0
생	2.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물	3.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남(Pb)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	5.불소(F)	1.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강 상	6.비소(As)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유	7.세레늄(Se)	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해	8.수은(Hg)	0.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영	9.시안(CN)	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향 무	10.6가크롬(Cr ⁺⁶)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T	11.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물	12.질산성질소(NO₃-N)	10mg/ℓ이하	불검출	0.7	0.8	2.4	2.6	0.3	0.7	1.4	0.8
질	13.카드뮴(Cd)	0.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보론(B)	1.0mg/ℓ이하	0.050	0.025	0.031	0.058	0.052	불검출	0.022	0.033	0.029
	15.페놀(Phenol)	0.005mg/£015h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다이아지논(Diazinon) 17.파라티온(Parathion)	0.02mg/ℓ이하 0.06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016r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카바릴(Carbaryl)	0.07mg/£015h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 강	20.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0.1mg/£0 ō}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상	21.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유	22.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해 영	23.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향	24.벤젠(Benzene)	0.0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유	25.톨루엔(Toluene)	0.7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 물	26.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질	27.크실렌(Xylene)	0.5㎜/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0.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0.002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 독	31.유리잔류염소 (Free residual chlorine)	4.0mg/ℓ0 ō⊦	0.97	0.26	0.88	0.73	0.89	0.27	0.22	0.63	0.84
제 및	32.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ℓ이(하	0.0457	0.0280	0.0393	0.0535	0.0232	0.0157	0.0333	0.0253	0.0297
소 독	33.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ℓ이하	0.01037	0.02262	0.03319	0.00785	0.00411	0.00992	0.01291	0.01663	0.02543
부 산	34.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03mg/ℓ이하	0.01581	0.00536	0.00615	0.01784	0.00919	0.00578	0.01189	0.00617	0.00425
물	35.디브로모클로로메탄 (Dibromochloromethane)	0.1mg/ℓ이하	0.0153	불검출	불검출	0.0206	0.0099	불검출	0.0085	0.0025	불검출

	검 사 항 목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0i
구 분		정수장,상수원 공급지역 기 준	안계	안계댈수 임하댐속		형산강 복류수 안계댐수		진전지	눌태지수	곡강천 복류수	(수지원공사)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신망,기계 일부
	36.경도(Hardness)	300mg/ℓ0 ō⊦	132.3	71.8	99.6	143.3	140.4	42.2	72.5	114.3	81.0
	37.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ℓ0lōŀ	3.16	4.44	3.83	4.19	1.58	1.34	4.10	2.80	4.90
	38.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39.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동(Cu)	1 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심	41.색도(Color)	5도이하	1.0	1.0	1.0	1.0	1.0	1.0	1.0	1.0	1.0
01	42.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적 영	43.수소이온농도(pH)	5.8-8.5	7.6	7.5	7.3	7.8	7.4	7.3	7.1	6.9	7.5
향	44.아연(Zn)	3mg/ℓ0 ō⊦	0.004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34	불검출	0.0030	0.0783	불검출
물	45.염소이온(CI ⁻)	250mg/ℓ0lōŀ	불검출	10	13	92	52	12	34	18	11
	46.증발잔류물(Total solids)	500mg/£0 ō	259.0	66.0	85.0	361.0	174.0	53.0	103.0	216.0	181.0
	47.철(Fe)	0.3mg/ℓ0 ō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8.망간(Mn)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0.008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탁도(Turbidity)	0.5mg/ℓ이하	0.060	0.138	0.083	0.101	0.053	0.077	0.089	0.079	0.069
	50.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0lōŀ	불검출	15	17	63	67	12	30	50	17
	51.알루미늄(AI)	0.2mg/원이하	불검출	0.025	불검출	0.03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36
	판 정	정수의 상기 항목	목에 대한 수	질검사를 실시	시한 결과, 모	두 먹는물수?	일기준에 적합	한 수질입니	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정 수 장 급수지역	유 강	공 단	양 덕	Al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성	
8 A 8 4	J &	용흥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동	택전리	문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ℓ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0 ō⊦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잔류염소	4.0mg/ℓ0 ō⊦	0.85	0.25	0.89	0.66	0.92	0.33	0.19	0.56	
6.동	1 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아연	3mg/£0 ō	0.0050	0.0028	불검출	0.0028	0.0025	불검출	0.0023	0.0835	
8.염소이온	250mg/ℓ0 ō⊦	74	11	13	97	55	13	36	19	
9.철	0.3mg/ℓ0 ō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3mg/ℓ0 ōŀ	불검출	불검출	0.008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판 정 수도꼭지 수돗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격합한 수질입니다.									

- ▶ 수돗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학야정수장 230-4791
-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